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748
----------	------

제출일자 : 2025. 10. 17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농업·농촌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비롯해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 전통과 문화의 보전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소규모·영세 경영 등 여러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나.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책무 관련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자 관련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다.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 중지 및 환수 관련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 라.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해촉, 위원장의 직무 관련 규정 및 평가(안 제9조 ~ 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본예산 편성시 확보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5. 9. 30. ~ 10. 2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
3. “농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5.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민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되, 필요 시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 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민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2. 신청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② 농민수당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
3.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인 경우

제6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2. 신청연도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3. 신청연도 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연도 전 5년 내에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제외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7조(지급신청 등)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농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의 평가
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담당 국장, 농업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그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군수는 매년 농민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 정보”라 한다)

③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농민수당 지급 및 운영회 심의수당 등 비용발생

3.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이후 지속적 비용 발생 예상
- 농민수당은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농가(6,300명정도)에 연1회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농민수당 심의위원 15명 중 위촉직 위원은 12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약 3,784천원 정도(연간)
 - 농민수당 : $6,300\text{명} \times 60\text{만원} = 3,780\text{백만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4,600천원 정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약 3,784백만원 정도(연간)

4.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이창훈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18,923,000
자체수입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18,923,000
의존재원						
세 출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18,923,000
일반보상금	3,780,000	3,780,000	3,780,000	3,780,000	3,780,000	18,900,000
사무관리비	4,600	4,600	4,600	4,600	4,600	23,000
재원 조달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18,923,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조금	-	-	-	-	-
	지방교부세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지방세	-	-	-	-	-
	세외수입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균 비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3,784,600	18,923,000
기 타	-	-	-	-	-	-